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14호]

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

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*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
* 舊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+ 舊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

2025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(제조DX멘토단)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기획·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

<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>

| 구분 | 지원 기간 | 지원 규모 | 지원 한도 | 지원 비중 | 접수 | 평가 선정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사전 기획 | 3개월(8회) | 1,000개사 내외 | 238만원 | 85% | '25.3월~수시 | 수시 |
| 구축 지도 | 3개월(4회) | 100개사 내외 | 119만원 | 85% | 최종 협약 후 2주 이내 | 수시 |
| 사후 관리 | 4개월 | 250개사 내외 | 최대 1,900만원 | 50% | '25.1월~3월 | '25.4월~6월 |

^{*}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

□ 신청 자격

-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 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 - * 종된 사업장의 경우,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

□ 지원 제외 사항

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▷ 휴·폐업중인 기업

-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□ 유의사항

- ㅇ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
- 각 유형별 세부공고는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 므로 추후 해당 지역별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
- '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' 관련 타 사업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등)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등을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있음

2. 유형별 세부내용

① 사전 기획

□ 지원 대상

○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□ 지원 내용

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| |
|-------|---|--|--|
| 사전 기획 | ■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(예시)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,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·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■ 제조현장 개선,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| | |

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1,000개사 내외
-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85% 지원

| 구 분 | | 지원방법 | 지원기간 | 사업비(분담비율)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т с | 시편하다 | 시전기간 | 정부지원 | 민간부담 | | |
| | 사전 기획 | DX멘토단 1인 x 8회 | 최대 3개월 | 238만원(85%) | 42만원(15%) * VAT미포함 | | |

□ 신청기간

○ 2025년 3월 3일 (월) ~ 예산 소진시

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(사전기획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| 구분 | 온라인 제출 서류 |
|----|---|
| 1 | 사업 신청서 |
| 2 |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|
| 3 |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 |
| 4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| 5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|

^{*}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② 구축지도

□ 지원대상

○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

□ 지원 내용

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| |
|-------|---|--|--|
| 구축 지도 | ■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(예시)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,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등 ■ 제조현장 개선,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| | |

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100개사 내외
- o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85% 지원

| 구 분 | | 지원방법 | 지원기간 | 사업비(분담비율)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Т | 전부 시원당합 시원기간 정부 | | 정부지원 | 민간부담 | | | |
| 구축 지 | 기도 | DX멘토단 1인 x 4회 | 최대 3개월 | 119만원(85%) | 21만원(15%) * VAT미포함 | | |

□ 신청기간

○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2주 이내

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(구축지도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| 구분 | 온라인 제출 서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|

□ 지원절차



③ 사후관리

□ 지원대상

- 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^{*} 또는 '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(기초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^{*}
- ②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*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** 보유 기업
 - *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(단,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
 - **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

□ 지원 내용

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
|-------|--|
| | ■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|
| | ■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|
| 사후 관리 | * (S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, 모듈 추가, 기능추가 지원 ** (H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· 결함수리, 기능 개조 지원 (단,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) |
| | ■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|

※ ^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^②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, ^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

<지원 부적정 항목(예시)>

- 1)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(예시 :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·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,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)
- 2) 임대 사용료,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(예시: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,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)
- 3)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(예시: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(주기적 활동)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)

□ 지원 범위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 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

| 지원항목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|---|
| 프로그램 수정·개선 | ◆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◆ 수정 프로그램 개발 ◆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◆ 화면 UI 수정 |
| 시스템 유지관리 | ◆ 공정 개선, 생산품목·원자재 변경,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◆ 공정, 생산장비,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(센서,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)과 분석·활용 지원 |
| 데이터 관리 | ◆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◆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◆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(품목정보, 공정정보, 단가, 입출고 정보 등) ◆ DB 최적화 |
| 사용자 운영 지원 | ◆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◆사용자 교육 지원 ◆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◆단말기, 스캐너,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 |
| 기타 | ◆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(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) |

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250개사 내외
- o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50% 지원

| 구 분 | | 지의바버 | 지원기간 | 사업비(분담비율) | |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구 분 지원방법 지 | | 시원기인 | 정부지원 | 민간부담 | |
| | 사후관리 | 총 사업비의 50% | 4개월 [*] (연장 2개월) | 최대 19백만원(50%) | 최대 19백만원(50%) * VAT미포함 | |

*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, 최대 6개월 초과 불가

□ 신청기간

-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시작일* ~ 3월 31일 (월) 17:00까지
 - * 추후 해당 지역별 테크노파크(제조혁신센터)에서 별도 공고(1월 말~ 2월 초 예정) 하므로,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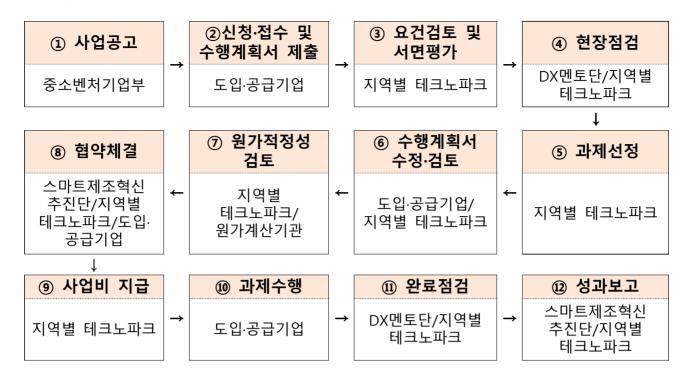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후관리 지원사업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| 구분 | 온라인 제출 서류 |
|----|--|
| 1 |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*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(지역 제조혁신센터(TP)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) |
| 2 | 사업자등록증명원 |
| 3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| 4 | 개인(신용) 및 기업(신용) 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・조회 동의서 |
| 5 |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[*] 발급번호(신청서에 기재) *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|
| 6 |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(SW, HW 등)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|

*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- ※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: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(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)
- ※ ④ 현장점검 : 외부전문가 1인(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)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(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)
- ※ ⑦ 원가적정성 검토 :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

□ 평가항목

- (서면평가)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
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후보대상으로 선정
 - * 지역 테크노파크별 가점(최대 5점) 부여 가능하며, 가점 항목은 추후 지역 테크노 파크별 별도 공고 확인

【사후관리지원 평가항목】

| | | 평가 등급 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|
| 구분 | 평 가 항 목 | | 양호 | 보통 | 다소 미흡 | 미흡 |
| 사후관리 | ○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·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 | | | | | |
| 지원 대상 적합성 | ○(자체구축)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| (O/×) | | | | |

| | ○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| | | (○/×) | | |
|--|---|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|
|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| ○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| 15 | 12 | 9 | 6 | 3 |
| | ○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| 15 | 12 | 9 | 6 | 3 |
| (40) | ○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| 10 | 8 | 6 | 4 | 2 |
| 관리 및 | ○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·운영 보유 역량 | 15 | 12 | 9 | 6 | 3 |
| 활용 (45) | ○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| 15 | 12 | 9 | 6 | 3 |
| | ○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·활용 노력 | 15 | 12 | 9 | 6 | 3 |
| 지원성과 (15) | ○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| 15 | 12 | 9 | 6 | 3 |
| 가점 (5) | ○별도 가점(최대 5점,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(TP)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) | | | | | |
| 평가 점수 | | | | | | |
| 평가 결과 (부적합 사항이 없으며,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) | | □ 적합 | | | □ 부적합 | |

 (현장점검)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

□ 유의사항

-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(원가계산) 실시
-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
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
-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
- 교부 보조금의 관리·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,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
-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
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-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

□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

| 지역 | 기관명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|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2-944-6032/6036 |
| 부산 |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1-974-9154 |
| 대구 |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3-602-1864/1860 |
| 경북 |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3-819-3056~8 |
| 포항 |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4-223-2242/2244 |
| 광주 |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62-602-0200 |
| 전남 |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61-729-2581~4 |
| 제주 |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64-720-3039 |
| 경기 |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31-500-3100 |
| 경기북부 [*] |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31-539-5145,5147 |
| 인천 |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32-260-0621~4 |
| 대전 |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42-930-4351~2 |
| 충남 |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41-589-0705 |
| 세종 |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44-850-2151/2154 |
| | | |
| 울산 |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2-219-8646/8910 |
| | | , |
| 울산 |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2-219-8646/8910 |
| 울산 |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52-219-8646/8910 |

^{*} 경기북부 : 파주시, 고양시, 포천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구리시, 동두천시, 연천군, 가평군, 의정부시